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(기능등급증명서, 보유증명서)의 발급 수수료에 대한 수납 주체를 명시하고 납부된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발급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의성을 개선하고 발급자 신분 식별을 위해 사진을 첨부토록 기능등급증명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의 수수료는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은 납부받은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발급수수료 적용례) 제8조제3항 발급 수수료의 수탁기관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 관한 사항은 '25.1.1일 이후 납부받은 수수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수수료) ①·② (생략)	제8조(수수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제1항의 수수료는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은 납부받은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u>

발급번호:

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

1. 성명:
2. 주민등록번호:
3. 직종:
4. 등급:

사 진
(3.5cm x 4.5cm)
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5제1항 및 「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건설근로자공제회

직인

유의
사항

1.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발급 신청 직전 달의 말일까지 등록된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4 각 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(정보보유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등에 따라 증명서의 표시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)
2. 기능등급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·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.
※ 본 증명서의 사진 삽입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며, 공제회의 사전 승인을 요합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150g/㎡)

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2호서식 부표]

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(세부 이력)

(앞쪽)

1.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

2. 기능등급

직 종	등 급	총 환산경력연수

3. 이력사항 (최근 순)

○ 퇴직공제

공사명	업체명	근로연월	근로일수	신고직종	통합직종

○ 고용보험 (일용)

공사명	업체명	근로연월	근로일수	신고직종	통합직종

○ 고용보험 (상용)

공사명	업체명	근무 시작월	근무 종료월	신고직종	통합직종

(뒤쪽)

○ 자격

자격명	등록번호	취득일	발급기관	통합직종

○ 교육·훈련

과정명	기 간	교육·훈련기관	통합직종

○ 기능경기대회 입상·포상

대회명	종목	순위	수여일	수여기관	통합직종

○ 기타
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5제1항 및 「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급증명서의 세부 이력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건설근로자공제회

직인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